

조문별 제·개정이유서 (개정일괄)

◇ 행정규칙명

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(NFPC 103A)

◇ 제·개정 이유

「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(NFPC 502)」 일부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「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(NFPC 103A)」을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.

◇ 주요내용

가. 제8조제5항을 삭제한다.

나. 제13조제4항을 "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를 옥내소화전설비·스프링클러설비·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·물분무소화설비·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."로 한다.